

논단



## 북한의 보험 산업 현황과 남북 협력 방안

신동호 / 보험개발원 부연구위원

## 남북한 산림 분야 협력 사업 추진 방안

박동균 / 동북아산림포럼 사무처장

## 북한의 보험 산업 현황과 남북 협력 방안

신동호 / 보험개발원 부연구위원

북한에서 보험제도는 국가 재산을 보호하여 계획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운영된다. 국가가 독점으로 보험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운영 주체, 보험 영업 활동, 재보험, 그리고 규제 및 감독 등에 있어서 남한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경제특구에서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제적 정황성에 부합하는 금융시스템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남북한 보험 산업간에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북한에서 경제 활동의 안전성 및 불의의 사고로부터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남북 경험은 새로운 국면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은 각종 위험을 담보하여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위험과 관련된 남한의 보험 상품으로는 해상적하보험, 남북한주민왕래보험, 경수로 건설공사 관련 각종 보험,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건설 보험 등이 있다. 향후의 남북 경험 활성화, 북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시 북한 위험에 대한 보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남북한 보험 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남북 경험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논의시에 보험 분야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한 보험협의를 구성하여 상호 보험 정보 교환 및 인력 교환 등을 시작하여야 한다.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신설될 경제특구에서 남한 보험 회사가 북한 지역의 위험을 직접 인수하거나 남북한이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보험출장사무소와 같은 남북한 보험 협의 창구 개설이 요구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한이 합작으로 보험 회사를 설립하는 등 국내 보험 회사의 북한 진출 방안이 있으며, 이때 외국 자본도 일부 참여시킬 수 있다.

북한에서의 각종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보호는 정부, 남한 및 외국의 기업, 관광객 등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남북 경험의 활성화에 보험 제도의 뒷받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간에 보험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 머리말

**남** 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제 협력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미 음악, 관광 분야에서는 남북한간에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중 과세 방지, 투자 보장 등 경협 확대에 관련된 제도 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9월중에 실무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경협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 분야에서도 대규모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실현될 경우, 관련된 신규 보험 시장 규모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sup>1)</sup>

남북 경협이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 이외에 북한 지역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한 보험 보호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남한의 대북 투자 기업들은 보험 보호 장치 없이 북한 투자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의 보험 제도나 현황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 보험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북한보험법」(1995), 「재정

금융사전」(1995), 조선국제보험회사의 각 연도 영문 연차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의 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북한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남북한 보험 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 남북한이 관련되는 남한 보험 회사의 보험 상품 및 보험료 규모 등을 분석한다.

단, 본 고에서 제시하는 북한 보험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북한이 외국의 재보험 회사와 거래하기 위하여 작성한 영문 연차보고서의 수치들은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본 고에서는 북한의 사회 보험에 관한 연구는 제외하며, 남북한 보험 산업의 협력 방안은 당장 남북 경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손해 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북한의 보험 산업 현황

### 북한의 보험 제도 특징

#### ○ 국영 독점

북한에도 보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은 각종 자료 및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

1) 「매일경제신문」(2000. 6.15).

므로, 북한의 보험 제도에 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려진 내용도 불확실하다. 북한은 과거에는 민법에서 보험을 규제하고 있었으나, 1995년에 최초로 제정된 보험법에서 나름대로 보험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sup>2)</sup> 북한의 보험은 크게 국내 보험과 국제 보험으로 구분된다. 국내 보험은 다시 인체 보험과 재산 보험으로 구분되며, 국제 보험은 외국인 대상의 보험과 재보험이 있다.

북한에서도 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은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한 도구로 사용된다.

북한은 국가가 직접 보험 사업을 완전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보험 시장에서 경쟁이 없으며, 보험 종목이 단순하고 보험 상품의 수도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외국 보험 회사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sup>3)</sup> 보험 회사의 자산 운영 측면에서 북한에서는 금융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므로, 정기 예금 외에는 마땅히 투자할 대상이 없다. 또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보험 계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 보험 회사는 파산할 위험이 없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보험 회사의 손해는 곧 국가의 손해이며, 언제든지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 요율 산출 및 감독 기능을 중립적인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운영의 주체인 국가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즉, 북한은 위험 인수, 자산 운영, 보험 감독 등 모든 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

## 국내 보험 및 국제 보험

### ○ 국내 보험

#### • 인체보험

북한의 인체보험은 계획 경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인체 보험은 근로자들의 노동 능력이나 생명·재산상의 손실을 보장하고 있다. 인체보험의 대상은 보험 계약이 만기되는 해의 나이가 16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자이다.<sup>4)</sup>

인체보험은 자원적 인체보험과 의무적 인

2) 나진·선봉경제특구에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 및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보험법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3) 북한은 보험법 제3조에서 나진·선봉과 같은 경제무역지대에서는 조선 동포를 포함하는 외국 보험 회사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설립된 사례는 없다.

체보험으로 구분된다. 자원적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사망보험, 재해보험, 만기보험, 어린이보험, 혼합생명보험, 연금보험, 단체보험, 일반상해보험, 정기부양보험, 소득보상보험이 포함되나, 실제로 모든 상품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 북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적 인체보험 상품으로는 생명보험, 만기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이 있으며, 의무적 인체보험은 여객보험이 유일하다.

북한의 생명보험은 상품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계획 경제의 특성상 국가가 무상으로 치료하며, 유가족 역시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북한은 시장 경제의 생명보험을 자본가들의 수탈 수단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적 착취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장기 저축성 성격을 갖고 있다. 생명보험금은 저축성 성격의 만기보험금과 사망보험금으로 구분된다.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만기보험금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만약에 계약 기간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피보험자들은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보험 계약 기간은 3년, 5년, 10년이며, 보험 금액은 100원을 단위로 하여 100원부터 1,000원

까지이다. 어린이보험의 계약 기간은 5년부터 13년까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 금액은 500원 이상이다.

반면에 재해보험과 여객보험은 보험료가 소멸되는 보장성 보험으로 운영된다. 북한은 그 이유를 보험료가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단순 설명하고 있다. 재해보험은 남한의 산재보험과 비교할 수 있는데, 일명 종업원단체보험이라고도 한다. 재해보험은 종업원들이 근무 중에 재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했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재해보험의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소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한다. 여객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보험료는 차량, 선박 요금의 5%로 고정되어 있으며, 여행 기간중의 사고 발생시에 노동능력상실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 • 재산보험

북한의 재산보험은 남한의 손해보험 범위에 포함된다. 북한의 재산보험은 국가 재산,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해 자연 재해 또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보험은 순수한 보장성 보험으로

4)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인민군대, 인민경비대, 사회안전원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자도 제외된다. 반면에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금이 지불되지만, 만기에 보험료는 상환되지 않는다.

재산보험은 고정 재산과 유동 재산을 담보한다. 재산보험의 종류에는 화재보험, 선박보험, 화물수송보험, 비행기보험, 기계과손보험, 건설공사 및 설비조립보험, 철도보험, 자동차보험, 원자력보험, 유리보험, 산림보험, 농작물보험, 집짐승보험이 있다.

북한에서 재산보험은 이윤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인민의 재산이 자연 재해와 뜻밖의 사고로 발생된 손해를 보장받는 데 있다. 재산보험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의 재산들은 의무적으로 재산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국가 소유의 건물, 설비, 공구 및 기구, 비품과 같은 고정 자산과 자재, 미완성 제품, 완제품, 상품, 농산물(벼, 옥수수 등)과 같은 유동 재산, 그리고 소, 말, 돼지, 양, 염소와 같은 공동 소유의 집짐승이다. 보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는 필요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질이 나빠서 사용할 수 없는 재산, 놀리고 있는 재산, 분배하거나 국가에 바칠 농산물, 미가공 농산물, 젓을 떼지 않은 새끼 집짐승 등이 해당된다.

재산보험은 자원적 재산보험과 의무적 재산보험으로 구분된다. 자원적 재산보험에는

개인 재산, 외국인 재산, 합영 재산들이 포함된다. 의무적 재산보험의 대상은 인민의 소유인 국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재산들이다. 이러한 재산들은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재산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 재산을 대상으로 의무보험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자연 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 받아 국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해외 시장에 재보험 출재를 하여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또 다른 의무적 재산보험의 종류에는 자동차 제3자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특히, 외국 대사관, 대표부, 합영·합작 회사들의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상보험 가운데 일부가 의무 보험 대상이 되고 있다. 남한에서는 주로 배상 책임의 의무 가입 대상인 반면에 북한의 의무 가입 대상은 국가 재산인 점이 특징이다. 특히, 남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품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농작물보험, 집짐승보험, 과일보험이 북한에서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남북한간의 의무보험 종목 비교는 다음의 <표>와 같다.

#### ○ 국제 보험

북한의 「재정금융사전(1995)」은 국제 보

〈표 1〉 남북한 의무보험 종목 비교

남한	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li> <li>- 산업재해보상보험</li> <li>- 화재보험 중에서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li> <li>-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li> <li>- 자동차배상책임보험</li> <li>-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li> <li>-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li> <li>- 항공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보험</li> <li>· 여객보험</li> <li>- 재산보험</li> <li>·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단체(협동농장 포함) 소유의 재산</li> <li>· 자동차 제3자배상책임보험</li> <li>· 해상보험에서 무역화물계약의 보험료 운임포함계약</li> <li>- 국제 보험</li> <li>· 수입화물보험</li> <li>· 외국인자동차공민피해보험</li> </ul>

자료: 대한손해보험협회(1994), 「손해보험약관집」; 조선사회과학출판사(1995), 「재정금융사전」.

험을 “대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 불의의 사고 등과 관련한 위험을 담보로 하며, 발생된 손해를 보상해주는 국제적인 손해 보상 거래이다”라고 정의한다. 북한에서 국제 보험은 대외 거래의 재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외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국제 보험은 국가 기관인 조선국제보험회사가 담당하며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 거래는 외화로 결제가 되며, 보험 거래 과정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규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북한의 국제 보험은 직접 보험과 재보험으로 구분된다. 직접 보험에는 국제수송화물보험, 배보험, 항공보험, 외국인재산보험, 자동차공민피해보험, 외국인관광객보험이 있다. 이 가운데 수입화물보험, 외국인자동차공민피해보험이 현재 북한에서 의무 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 외국인자동차공민피해보험을 의무 보험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외국인 자동차가 북한 인민의 생명 또는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이지만, 동시에 외화 획득의 목적도 있다.

#### 보험 운영 기관 및 감독 기관

##### ○ 중앙은행 저금보험처

생명보험의 운영 주체는 보험 회사가 아닌 중앙은행의 저금보험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은 생명보험을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한 수단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금융 시장에서 화폐량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도 수입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책임 준비금 형식으로 보관하거나, 투자 수익 목적으로 자산 운영을 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북한의 생명보험에 관한 자료나 보험 요율, 보험료 규모에 관한

통계적 자료는 전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통계 자료를 집적하고 있는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 조선국제보험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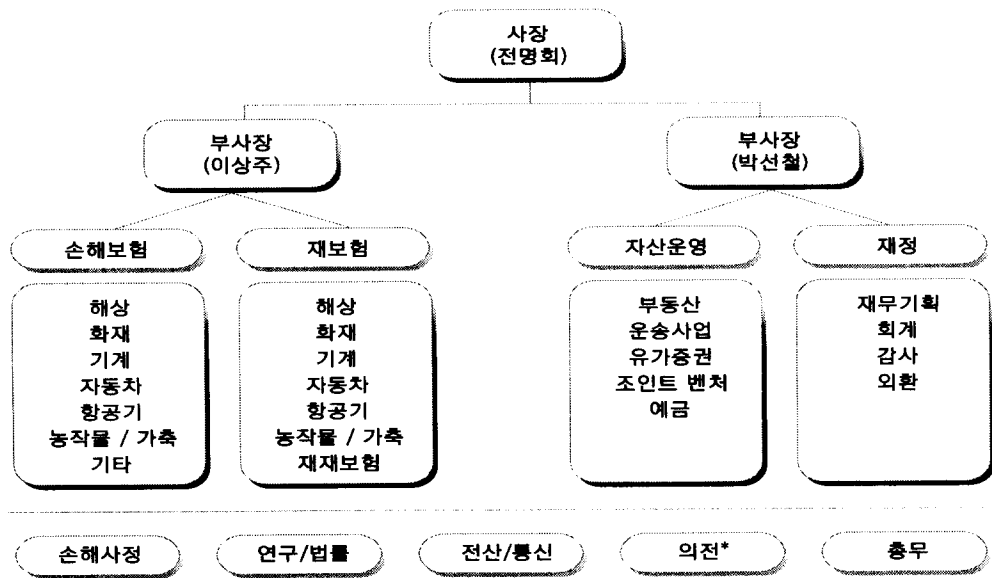
• 개요

조선국제보험회사는 1947년 7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 종목과 재보험을 담당하는 북한의 유일한 국가 보험 기관이다. 조선국제보험회사는 해외에서 재보험 거래를 위하여 간단한 영문 연

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1999년도의 영문 연차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조직 현황도와 보험 종목별 점유율을 공개하였다. 同자료에 의하면 북한 전 지역에 208 개의 지점과 1,500 명의 직원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지점은 1997년도까지 파리, 함부르크, 바젤, 카라치, 멕시코에 설치 운영되었으나, 1998년에는 런던지점을 신설하였다.

同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험 상품은 화재, 선박, 수송 화물, 건설 및 설비 조립, 기계 파손, 자동차, 농작물, 과일, 집짐승, 비행기, 산림, 철도보험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의 재산보험을 운영하며, 외국과의 재보험

<그림 1> 조선국제보험회사 조직도



자료: 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1999), '98 Annual Report and Account, p. 2.

주: \*는 Protocol을 번역한 것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선국제보험회사의 조직도에서 특이한 사항은 손해보험 및 재보험 종목 비율에서 화재보험, 해상보험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농작물·가축보험이 운영되며, 그 비율이 높은 점이다.

자산 운영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수단 이외에 운송 사업과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에 투자한다고 명시한 점이 특이하다. 북한에는 회사채 시장이 없으므로 유가증권은 국채 위주일 것이며, 운송 사업은 차량, 기차 등의 운송 사업에, 그리고 조인트 벤처는 외국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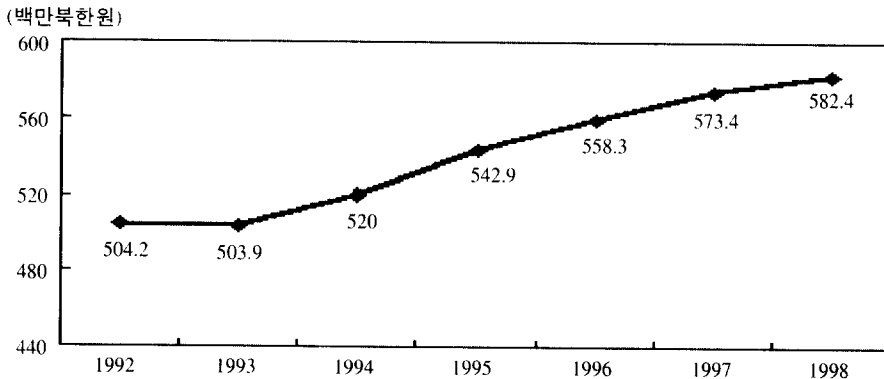
과의 합병·합작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 손해보험 시장 규모 및 종목 구성 비율

북한의 손해보험 및 재보험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1998년도에 총 5억 8,200만 북한원이며, 미화(1 달러 = 2.2 북한원)로 계산하면 2억 6,400만 달러이다.<sup>5)</sup> 199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1.5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과 비교하면,<sup>6)</sup> 북한 손해보험의 종목 구성 비율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보험 종목 구성을 살펴보면, 화재보험이 36%로 가장

〈그림 2〉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보험료 발전 추이(199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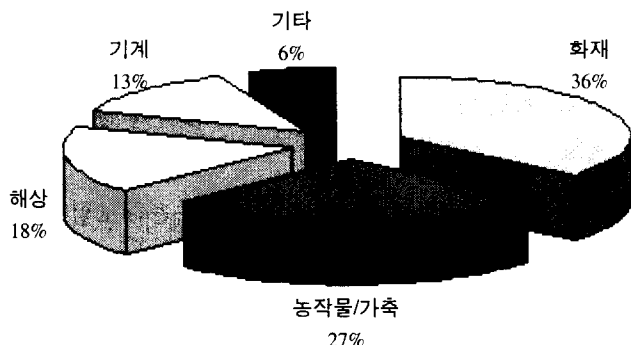
자료: 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 Annual Report, 각연도.

주: 1994년도는 추정치임.

5) 1998년도 남한의 손해 보험료 규모는 약 121.1억 달러이므로, 북한 손해보험 시장의 규모는 남한의 약 2.17%로 계산된다. 단, 대미 환율(1998)은 남한이 1,207.8 원, 북한이 2.2 원이다.

6) 남한(1998년)의 경우 장기보험(42.8%), 자동차보험(35.1%)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화재보험은 1.9%, 해상보험은 2.6%에 불과하다(보험개발원(1999), 「손해보험통계연보」).

〈그림 3〉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보험 종목 구성 비율



높으며, 그 다음이 농작물·가축보험이 27%, 해상보험이 18%, 기계보험이 13%, 기타가 6%이다. 이러한 구성 비율은 민간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계획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시장 경제에서 산업이 발전할수록 화재보험, 해상보험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며, 반면에 자동차보험, 기술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이 세계 시장의 추세이다.

○ 보험감독기관 : 국가보험위원회

국가보험위원회는 국가 보험 사업을 감독하는 국가 기관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보험 감독 기관이 비상설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동 위원회에는 재정부, 중앙은행, 농업위원회, 수산위원회, 철도부, 건설부, 해운부, 육운총국의 각각 상이한 성격의 중앙 기관들이 참여한다는 사실도 특이하다. 同위원회는

「북한보험법」과 그에 따르는 규정 세칙들에 의한 보험 사업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보험 요율의 산출 및 적용, 손해 발생시의 손해 사정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보험 감독 기관이 직접 요율을 산출하고 손해 사정을 한다는 사실은 시장 경제 관점에서는 매우 이해되기 어려우며, 이러한 업무가 북한에서는 매우 형식적일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 일으킨다.

국가보험위원회는 대외 관계에서 북한의 국가 보험 기관을 대표하며, 국제 보험 기구를 비롯한 외국의 재보험 회사들과 대외 사업을 진행한다. 이때, 해외 재보험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조선국제보험회사와 대외 관계에서 북한의 국가 보험 기관을 대표한다는 국가보험위원회의 상호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문이 생긴다. 조선국제보험회사는 대외용으로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보험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 탈북자가 전하는 북한의 보험 실상<sup>7)</sup>

보험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아주 단순하며 제한적이다. 북한에서 직장이나 기관은 은행으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보험 및 예금 강요를 받고 있다. 그러나 3~5%의 낮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의 영향으로 북한 주민에게 보험은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공제하는 일종의 강요된 저축 수단으로 간주된다.

개인들이 인체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가입하더라도 실제로 보험계약서는 발급되지 않고 있으며, 발급되더라도 기관의 경리나 부기원들이 보관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보험약관이나 규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sup>8)</sup> 만약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개인들은 병원에서 일정 기간 치료를 거쳐 업무나 노동에 복귀하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공장·기관·기업소들은 의무적으로 재산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국제보험의 경우 기업소 고정 재산의 2%, 국내보험의 경우 1%를 중앙은행에서 일괄 적용한다. 보험 업무는 실제로 중앙은행 및 지역은행의 '사회·국제보험과'에서 담당한다.

이러한 탈북자의 증언을 참조할 때, 조선국제보험회사의 영문 연차보고서에 언급된 전국적인 지점망은 곧 중앙은행의 지점망과 동일할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생긴다.

### 남북한 관련 보험 상품

#### 해상적하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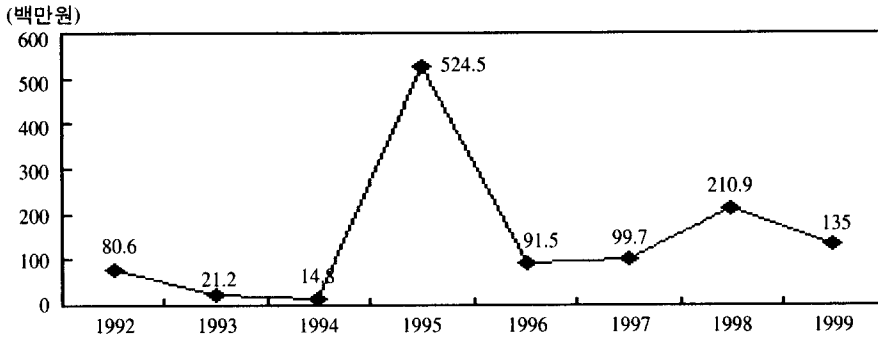
남북 경험과 관련이 가장 높은 보험은 해상적하보험이다. 남북한간 물자 교역은 대부분 해상 운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남포~인천, 나진~부산항간에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그리고 장전~동해간에 금강산 관광을 위한 정기 여객선이 운항중이다.

남북한간의 해상 운송에 따른 위험은 해상적하보험에서 담보된다. 적하보험의 수입 보험료는 1992년에 8,000만 원이었으며, 1999년에는 1억 3,4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는 보험료 규모도 적은 편이며 뚜렷한 증가 추세는 나타나지 않으나, 향후 남북 경험의 활성화에 따라 적하보험료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95년에는 북한의 심각한 홍수 피해로 인하여

7) 북한연구소에 근무하는 탈북자 출신 김승철氏의 증언(2000. 7) 내용.

8) 북한은 일반 주민에게 민법이나 형법 등은 물론이고 보험약관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유는 주민의 개인적 권익 추고, 저항 의식 발생, 사회적 여론의 악화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도 매년 산재 및 불의의 사고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있으나 보험금을 받기 위한 개인의 보험금 청구는 없다.

〈그림 4〉 남북한 해상적하보험료 발전 추이(1992~99)



자료: 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 Annual Report, 각연도.

남한에서 쌀, 비료 등의 물자를 대량 지원함에 따라 적하보험료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 하였던 사례가 있다. 현재 경의선과 경원선 복원이 추진되고 있지만, 남북한간에는 당분간 해상 운송이 주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적하보험은 남한 보험 회사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남북한 물자 교역과 관련된 해상적하 보험료 발전 추이는 아래와 같다.

#### 남북한주민왕래보험

남북한주민왕래보험은 1990년에 최초로 인가된 이래 보험 가입 실적이 없었으나, 1998년의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활성화되고 있다. 同보험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따른 보험금, 인질 구조 비용, 석방보석금, 인질위로 금 등을 담보하고 있다. 현대상선이 금강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주고 있

으며, 2000년 9월 현재 약 30여만 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1998년에 同보험의 가입 건수는 1만 3,000 건에 보험료가 8,3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금강산 관광 붐을 타고 1999년에는 가입 건수 13만 8,000 건에 보험료가 8억 6,000만 원으로 급증하였다. 남북한주민왕래보험에는 주로 금강산 관광객만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남북한간에 정치인, 경제인, 체육인, 음악인, 이산가족 등의 남북한 상호 방문이 실현되고 있으나 남북한주민왕래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동안에 발생한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한 여자 관광객이 북한에 3 일 이상 억류되었다 석방되어서 1,000만 원의 인질 위로금을 받은 사례(1999. 7)가 있으며, 관광선 내, 혹은 관광 중에 발생한 다수의 부상 사고 및 질

병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 건설공사보험 및 선박보험

금강산 관광 개발과 관련하여 장전항 부두 시설, 편의 시설, 온정리 온천장 신축 공사 등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보험이 체결되어 있다. 이러한 보험 계약은 북한측이 아닌 남한의 보험 회사와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해외 재보험 회사에 재보험 출재되었다. 사고 사례로서는 1999년 9월에 장전항 부두 시설 공사 현장에서 태풍 'Ann'의 영향으로 방파제 유실 사고가 발생하여 현대건설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다.

그 외에 금강산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 및 터그선(총 7 척)은 운항 중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상 위험 및 전쟁 위험을 담보 받기 위해 선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현재까지 사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수로건설보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북한 금호지구에 원자력 발전소(가압 경수로 방식)를 무상으로 건설해 주고 있다. 이미 기초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2000년 2월부터 9년 동안 약 4조 5,000억 원의 규모의 본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KEDO측의 주 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공사를 총괄하고 있으며, 보험 계약 역시 그러하다.

기초 공사 당시 북한은 경수로 공사와 관련된 일부 보험 종목을 직접 인수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sup>9)</sup> 한전은 담보 능력이 충분한 남한의 손해보험 회사와 대부분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배상책임 보험은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인수하도

〈표 2〉 금호지구 경수로건설보험 관련 보험 종목 및 담보 내용

보험 종목	담보 내용
조립보험	현장에서 조립과 관련된 제반 물적 손해
적하보험	건설 자재, 장비 운송 도중 및 보관 중 발생한 손해
신변안전보험	인력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치료비, 억류시 구조 비용 등
배상책임보험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영업 배상, 사용자 배상, 전문직 배상)
자동차보험	공사 관계자들의 자동차 운행 관련한 인적·물적 손해
동산종합보험	건설 장비 및 비품에 대한 물적 손해

9) 한국전력공사 및 참여 보험 회사와의 면담 내용에 의하면,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는 노동자재해보험, 건설조립보험, 기계파손보험, 화재보험 및 해상수송화물보험을 인수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록 하였으며,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종합보험은 남한의 보험 회사가 인수하도록 하였다. 기초 공사와 관련된 보험 계약 내용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sup>10)</sup>

경수로 건설 본공사와 관련된 보험료 규모는 총 950억 원이며, LG화재가 간사사가 되어서 남한의 손해보험 회사들이 보험 종목별로 나누어서 인수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험 종목과 담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1)</sup>

### 남북 보험 산업 협력 방안

#### 단기 협력 방안

##### ○ 남북한 보험 협의의 창구 개설

현재 남북한간에 보험에 관한 협의는 전혀 없다.<sup>12)</sup> 남북 경협과 관련하여 남한의 임가공 기업체들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보호 장치 없이 북한 투자에 임하고 있다. 단지 남북한 해상 운송시에 적화보험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 항구에서 공장까지의 육상 운송,

공장 건물 및 설비 구축, 기계 가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그리고 남한 기술자의 파견에 따른 각종 위험 등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으며, 하늘의 운과 남북한의 정치적 변수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북한 보험 협의 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한 보험 회사의 북한 진출이나 남북한간에 위험을 공동 인수시에, 그리고 사고 발생 후의 손해 사정 등에 관하여 남북한간에 논의가 된다면, 남북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심하고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경수로 건설 현장이나 경제특구에서 남한 보험 회사가 손해 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절차가 단순해지고 비용 및 시간도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보험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남북 경협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 분야에서만 남북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남북한 장관급회담<sup>13)</sup>에서 보험 분야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10) 단지, 건설공사보험의 보험가액이 4,1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종목의 보험가액 및 보험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향신문』(1998. 7.13)).

11) 『매일경제신문』(2000. 6.15).

12) 경수로 건설 관련 보험은 남한이 아닌 KEDO라는 국제 기구와 북한과의 계약이다.

13)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양측간 투자보장협정, 이종과세방지협정, 분쟁 해결 절차, 청산결제협정 등 경협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9월중에 실무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 정보 교환 및 인력 교류

남북한 보험은 경제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르게 발전하여 왔다. 이에 남북한은 보험 정보 및 인력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향후 남북한간에 보험 사업을 협력하기 위해서도 보험 자료 교환 및 인력 교류가 전제 조건이다. 더욱이 북한 지역에서 각종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험 통계 및 자료 교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서는 중국과 같은 제3국에서 민간 차원에서의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하거나, 대학의 보험학과 간에 보험 교재 교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및 승인이 필요하겠지만 보험 회사나 감독 기관 간에 연수생을 상호 교환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미 북한은 해외 재보험 회사의 연수 프로그램에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보험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므로, 남한에서 전문가를 연수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 중기 협력 방안

○ 경제특구에서 남북한 보험 산업이 공조  
북한은 개성·원산지역 등에 경제특구를

신설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지대에서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경제특구에서는 국제 관행에 적합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특구에서는 공단 조성에서부터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등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투입되므로, 각종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 수요가 창출된다.

이에 경제특구에서 남한 보험 회사가 북한 지역의 위험을 직접 인수하거나, 남북한이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현재 북한보험법에서는 북한 보험 회사에 보험 가입을 하도록 강제하며, 다만 경제무역지대에 한해서 외국 보험 회사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 보험 회사가 직접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 위험 평가, 손해 사정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남한은 위험 인수 기법이나 담보 능력을 제공하고, 북한과 위험을 공동 인수하거나 혹은 프론틱(fronting)<sup>14)</sup> 방식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재보험은 남북한이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북한은 해외 재보험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재보험 수요가 미개발된 상태이다. 특히 자연 재해 위험의 재보험 출재는 북한의 관

심 사항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남북한 보험 협의 창구가 개설되어야 하며, 향후 경제특구에 보험 출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한 보험은 경수로 건설을 계기로 접촉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자동차보험은 북한이 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하고 그 이상의 위험은 남한이 인수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경제특구지역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위험을 인수하거나,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 장기 협력 방안

#### ○ 남북한 합작 보험 회사 설립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에 남북한 합작 보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면, 보험 사업 인허가, 위험 인수, 재보험 출재, 손해 사정 등 제반 문제점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물론 남북한 각각의 보험법과 관련된 제반 법규, 금융 및 보험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sup>15)</sup>

남북한이 벤치마킹(benchmarking)할 수 있는 사례로서는 독일 통일, 베트남 및 중국의 개방화 정책이 있다. 독일 통일 전에 당시 구서독의 알리안즈(Allianz)보험회사는 구동독의 국영 보험 회사와 합작 보험 회사를 설립(1990. 7)하여 구동독 보험 시장을 선점하였다. 베트남에서는 1999년에 대만의 Chinfon보험회사와 캐나다의 Manulife보험회사가 합작 보험 회사를 설립한 사례가 있다.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방 정책을 실시하는 중국에서도 1999년에 상해보험회사와 미국의 John Hancock Mutual Life회사가 합작 보험 회사를 설립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중국과 베트남도 외국과의 합작 보험 회사를 인가한 사례가 있으므로, 남북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합작 보험 회사의 설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맺음말

최근 남북 경제협의 활성화에 따라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14) 해당 국가에서 영업권이 없는 외국의 보험 회사가, 현지 보험 회사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계약을 인수시킨 다음,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차 인수하는 방식이다.

15) 남한의 관련 법령으로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국내 기업 및 경제 단체의 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그리고 '외국환관리법' 등이 있다. 북한의 관련 법령으로는 '외국투자은행법',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그리고 '외국 투자 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등이 있다.



임가공 중심의 교역과 개별 기업 중심의 대북 투자, 그리고 예술·관광·이산가족 방문 등의 인적 교류가 진행중이다. 곧 경인선·경원선 복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개성 경제특구의 조성과 같은 대규모 직접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북한이라는 특수 보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에서 보험 제도는 국가 재산을 보호하여 계획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운영된다. 국가가 독점으로 보험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운영 주체, 보험 종목 구성 비율, 보험료 규모, 의무보험, 그리고 규제 및 감독 등에 있어서 남한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북한은 남한 및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한다. 남한 입장에서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과 기업의 대북 투자, 그리고 인적 교류는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한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미 남한의 보험 회사들은 적하보험, 남북한주민왕래보험, 경수로 건설 공사 관련 각종 보험,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보험 등에서 북한 수요를 부분적으로 충족시켜 왔다. 향후의 남북 경협, 북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인하여 보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남북한 보험 산업은 보다 적극적으

로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남북 경협에 관한 제도화 논의에 보험 분야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한 보험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보험 정보 교환 및 인력 교환 등을 시작하여야 한다.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신설될 경제특구에서 남한 보험 회사가 북한 지역의 위험을 직접 인수하거나, 남북한이 공동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한이 합작으로 보험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때 외국 자본도 일부 참여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의 각종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보호는 정부, 남한 및 외국의 기업, 관광객 등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보험은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고유의 기능이 있으므로, 남북 경협의 활성화에 보험 제도의 뒷받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간에 보험 분야에도 협력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22**